

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(제3조제1항제3호관련)

1. 삭제 <2005.11.14>
2. 폐기물의 예방 및 처리기준
 - 가. 교지 및 교사는 청결히 유지하여 하며, 폐기물의 재활용 조치 등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량화에 노력할 것
 - 나. 학교내에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·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
 - 다.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할 것
3. 소음의 기준
 - 교사내의 소음은 55dB(A) 이하로 할 것